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00
----------	-------

발의연월일 : 2026. 2. 2.

발 의 자 : 정점식 · 신성범 · 박덕흠
이헌승 · 김미애 · 고동진
김재섭 · 김정재 · 구자근
유상범 · 성일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5만 명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의원 정수를 1명으로,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명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시·도의 전체 인구나 생활권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원 정수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자치구·시·군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한 최소 정수 배정 기

준은 인구 감소가 지속·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치구·시·군별 최소 시·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5만명”을 각각 “4만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수 외에 인구변동 추이, 인구감소지역의 분포, 생활권의 연계성 및 지역대표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가 1인인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 인구 4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

원정수를 1인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④ (생 략)	<u>외에 인구변동 추이, 인구감소 지역의 분포, 생활권의 연계성 및 지역대표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